

제234회 정례회  
2004. 12. 20(월)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

교육사회위원회

##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

### 심사 보고서

#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4년 11월 11일(충청북도지사)

나. 회부일자 : 2004년 11월 11일

다. 상정일자 : 2004년 12월 14일(제5차 교육사회위원회)

#### 2. 제안설명 요지(공무원교육원장 신석균)

##### 가. 제안이유

- 지난 '87년부터 교육훈련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위해 운영해 온 공무원 교육시상기금이, 시중의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로 적정한 시상금의 지급이 어려워짐에 따라,
- 동 기금을 폐지하고 시상경비를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임

##### 나. 주요골자

- “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”를 폐지하는 것임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지용·옥)

- 금번 제출된 “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”은
  -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진 공무원교육 시상기금을 폐지하고, 교육시장경비를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교육 훈련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정한 시상을 함으로써, 공무원의 능력 발전과 사기昂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  - 그러나,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금을 폐지하고, 매년 예산을 새로 편성해야 하는 등 사업비 확보가 불확실한 일반 회계로 운영할 경우, 시상금 지급의 안정성 확보대책, 현재까지 기금운용상황과 기금잔액의 처리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# 5. 토론요지 : 없음

#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# 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###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## 9. 첨부서류

-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

##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260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4년 월 일  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□ 제안이유

- 지난 '87년부터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양양을 도모하고 교육훈련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위하여 설치·운영해 왔으나,
- 시중의 금리인하로 이자수입액이 낮아 적정규모의 시상금 지급이 어려워 이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에 귀속하고, 시상경비 전액을 2005년부터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폐지 하려는 것임

### □ 주요골자

-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 폐지

### □ 의안전문 : 따로붙임

### □ 관계법령 발췌 : 따로붙임

##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

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(조례 제2559호, 2000. 3. 13)는 이를 폐지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【지방자치법】

#### 第133條 (財產 및 基金의 設置)

①地方自治團體는 行政目的의 達成을 위하여 또는 公益上 필요한 경우에는 財產을 보유하거나, 특정한 資金의 運用을 위한 基金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第1項의 財產의 보유, 基金의 設置·運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.

### 【지방재정법】

#### 第110條 (基金의 運用등)

①地方自治法 第13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하는 基金은 條例로 정하는 特別한 目的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運用하여야 한다.

#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

제정 2000. 3. 13 조례 제2559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양양을 도모하고 교육훈련 우수공무원에게 시상(이하 “교육상”이라 한다)하기 위해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(이하 “교육원”이라 한다)에 설치한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고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시상대상자)** 교육상은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이수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.

1. 성적우수자 :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으로 교육훈련 기간이 2주이상이고 교육훈련 평가가 실시되는 과정
2. 교육운영유공자 : 각 과정별 교육생자치회의 임원
3. 우수분임 : 분임토의 평가결과 최우수 및 우수 분임조

**제3조(시상시기 및 시상금·품 등)** ①교육상은 교육원장이 매 교육과정의 수료시에 시상한다.

②성적우수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시식의 상장 및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범위내에서 시상금을 수여한다.

③교육운영유공자와 우수분임의 시상금·품은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.

④교육원장은 수상자 명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.

## 제4조(기금의 설치)

- ①제3조에서 규정한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기금을 설치한다.
- ②기금설치 당시의 기금액은 171백만원으로 한다.

③ 시상금의 집행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시상금의 지급총액은 전년도 기금운용 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.

제5조(기금의 재원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대통령 특별지원금
2.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
3. 기타 수입

제6조(기금의 운용관리) ① 기금은 교육원장이 운영·관리한다.

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수익과 안전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관리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
③ 기금관리는 세입·세출외현금 「공·군·원교육시상기금」 구좌로 한다.

④ 교육원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.

⑤ 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 예탁증서, 지급명부,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.

제7조(기금운용계획) ① 교육원장은 대년 1월31일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·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
2. 전년도 시상금 지급금액 및 당해년도 지급계획
3.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
4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8조(교육상 운영위원회) ① 교육원장은 교육상의 효율적 운영·관리를 위하여 교육 상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

교육원장이 되고, 위원은 위원장이 교육원 간부직원중에서 임명한다.

③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시상대상 교육과정의 선정 및 수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
3. 기금의 적립 및 운용 결산에 관한 사항
4. 기타 교육상의 운영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9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
②정기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1회 개최하며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한다.

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감독) 도지사는 교육원의 기금운용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11조(운영규정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